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5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0년 4월 1일

나. 발 의 자: 고기관 의원 외 5명

다. 회부일자: 2020년 5월 7일

라. 상정일자: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5. 1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고기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응급의료장비를 갖춘 시설에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응급의료장비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(안 제3조)
-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시 설치 장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에 대한 안내도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국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, 장비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발의된 안건임.
- 주요내용은,
 - 안 제3조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,
 - 안 제6조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음.
- 검토결과,
 -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며,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약 70%가 정상 회복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용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짐.
 -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설치 위치에 대한 정보 부족이 있음.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에 설치 위치 명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,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.
 - 자동심장충격기의 낮은 사용률을 고려할 때,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이용자가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장비의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기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일

발 의 자 : 고기판 의원 외 5명

1. 제안이유

응급의료장비를 갖춘 시설에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응급의료장비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(안 제3조)
- 나.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집행
- 다. 입법예고((2020. 4. 9. ~ 4. 13.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**발생하였을**”을 “**발생한**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설치

같은 조 제2항 중 “**있다**”를 “**있으며,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**」를 따른다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장비의 관리)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,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호에 해당하는**”을 “**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**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응급의료”란 응급환자가 <u>발생하였을</u>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·구조·이송·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.	2. ----- <u>발생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응급의료 지원)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응급의료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.
1. <u>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</u>	1. <u>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 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설치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있으며,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

<u><신 설></u> 제7조(응급처치 교육) 구청장은 다음 각 <u>호에</u> 해당하는 사람에 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 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	<u>례」를 따른다.</u> 제6조(장비의 관리) 제3조제2항의 <u>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 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 을 실시하며, 사용설명서를 비 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</u> 제7조(응급처치 교육) ----- ----- <u>호의 어느 하나에</u> 해당 <u>하는</u>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---	--